

대 회 규 정

제 1조 본 대회는 제32회 협회장기 전국남·여 하키대회라 칭한다.

제 2조 본 대회는 대한하키협회가 주최한다.

제 3조 본 대회는 매년 1회씩 개최하며, 대회일자 및 장소는 주최측에서 결정한다.

제 4조 본 대회 참가자격은 대한하키협회 2013년도 선수등록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단일팀이어야 한다.

제 5조 본 대회 경기방식은 중·고등부는 토너먼트로 실시하며, 대학일반부는 6팀까지는 풀리그전, 7팀부터는 조별리그전 후 순위결정전을 한다. 단 시상은 대학부, 일반부로 구분하여 시상한다.

제 6조 본 대회 경기시간은 중등부 60분(30분+30분), 고등부, 대학일반부 70분(35분+35분)간으로 한다.

1. 모든 예선경기는 연장전 없이 중등부는 페널티스트로크를 실시하며, 고등부는 페널티슛아웃(Shoot-Out)을 실시한다.
2. 대학일반부는 리그전일 경우 채점방법은 승자3점, 무승부1점, 패자0점으로 채점하고 동점일 경우
1) 이긴 경기 수. 2)골득실차. 3)다득점. 4)승자승 순으로 하며 이 네가지가 같은 경우 페널티슛아웃(Shoot-Out) 5회를 실시한다.
3. 중·고등부는 준결승전부터 무승부일 경우 연장전을 실시하며 연장전은 휴식 시간 없이 7분 30초씩 전, 후반으로 실시하며, 연장전 시 어느 한 팀이 골을 얻게 되면 그 순간 경기는 종료되며, 그 팀이 경기의 승자가 된다. 단 연장전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만약 무승부로 종료될 경우 중등부는 페널티스트로크 5회를 실시하며, 고등부는 페널티 슛아웃(Shoot-Out) 5회를 실시하여 승자를 결정한다. 대학일반부 순위결정전은 연장전 없이 페널티슛아웃(Shoot-Out) 5회를 실시한다.

제 7조 본 대회 경기 시작 시에 각 팀은 11명의 선수가 출전하여야 하며 경기진행 중에는 경기장에 최소 8명의 선수가 있어야 한다. 이를 위반 시에는 경기를 종료시킨다.

(이 경우에 상대팀에게는 득실차이가 없을 경우 5:0으로 승리한 것으로 처리하고, 득차 발생시에는 5골을 가산한 점수로 승리한 것으로 처리한다)

제 8조 본 대회 경기도중 일몰 또는 기타사유로 경기진행이 불가능할 시는 주최측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갖되 득점차가 있을 시에는 잔여시간의 경기만,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시간의 경기를 갖는다.(승부타도 잔여경기 시간에 속함)

제 9조 선수교체는 전 경기시간을 통해서 엔트리 18명 이내에서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.

제10조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각되었을 시는 성적여하를 막론하고 팀 실격으로 처리한다.(경기 중 부정선수가 발각된 팀이 발생할 경우 상대 팀은 자동 승리한 것으로 간주함.)

1. 경기도중 집단적으로 경기장을 이탈 및 경기에 불응하여 심판이 경고한 후 지정한 시간 이내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게임으로 처리하며 본 협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.(몰수게임으로 처리될 경우 그 대회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한다.)
2. 대회기간 중 일시퇴장을 2회 당한 선수는 당해 경기는 물론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.
3. 완전퇴장을 당한 선수는 당해 경기는 물론 그 대회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본 협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.
4. 팀 벤치에 감독, 코치가 특별한 사유 없이 벤치를 이탈 시는 본 협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.
5. 본 대회 부정선수 및 이의신청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6하 원칙에 따라(단장, 부장, 감독 명의로)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.
6. 상기사항 이외 발생하는 사항은 “경기 중 시행규칙”에 의거 처리한다.

제11조 본 대회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불참한 팀은 대한하키협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.

제12조 본 대회 우승 팀에게는 우승기를 수여하며 우승기는 차기 대회 시까지 보관하였다가 다음대회에 주최 측에 반환하여야 한다. 단, 보관도중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변상할 의무가 있다.

제13조 본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본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측에서 추가 결정한다.